

# 2018년 경제정책방향

사람중심 경제!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



# 2018년 경제정책방향

사람중심 경제!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

## 일자리·소득주도 성장

- 01 청년 |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1
- 02 여성 |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('22년 55.3%)까지 높이겠습니다 4
- 03 중장년·어르신 |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5
- 04 저소득·취약계층 | 생활안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6
- 05 생계비(주거·의료·교육·교통·통신)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7

## 혁신 성장

- 01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9
- 02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혁신하겠습니다 9
- 03 중소·벤처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
- 04 산업·경제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12

## 공정 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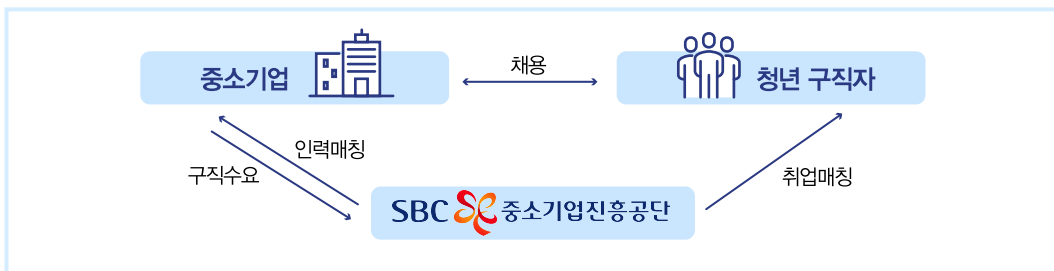
- 01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4
- 02 공공부문에서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5

# 01 청년 |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

## 청년 일자리 확대

### •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

-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·신산업 중심 지원방향으로 개편
-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사항 신속 지원(정부합동지원반 구성)
- 「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」 도입(1천명에게 3년간 취업보장)



-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 
(청년 참여단 100명~200명 등이 일자리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·기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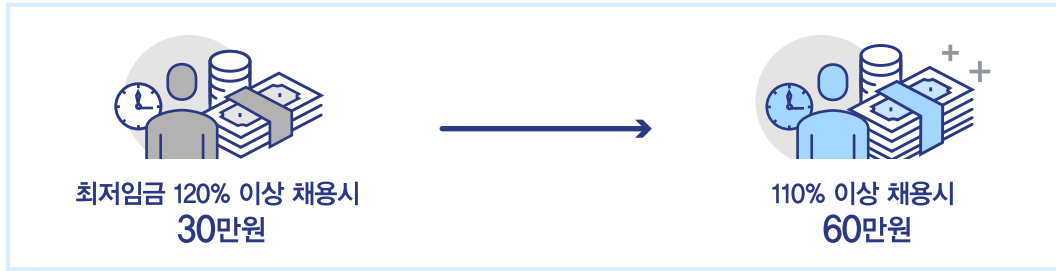
### •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및 세제 지원 강화

#### 〈예산〉

- '18년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 
('18년 청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 14.7% > '18년 예산 증가율 7.1%)
- 일자리 예산을 1/4분기 중 역대최고수준 집행('18년 34.5% 이상)
-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확대  
('17년 681억원, 9.5만명 → '18년 1,728억원, 19만명)
- '중소기업 추가고용(2+1) 장려금' 지원 요건 대폭 개선

	현행	개선
① 대상	233개 성장유망 업종	100개 이상 업종 추가
② 방식	3·6·9인 고용시에만 지원	인원비례 지원 (예 : 4인 고용시 1.33명분)
③ 한도	기업당 최대 3명	기업 현원의 최대 30%

- 중견기업 시간선택제 채용시 인건비 지원 한시 확대



## 〈세 제〉

- 고용증대세제 신설, 청년 정규직 고용시 지원금액 우대

[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금액 ]

(인당, 만원)

	중소기업(2년간)		중견기업(2년간)	대기업(1년간)
	수도권	지방		
상시근로자	700(1,400)	770(1,540)	450(900)	
청년 정규직	1,000(2,000)	1,100(2,200)	700(1,400)	300(300)

- 청년 고용시 사회보험료 100% 세액공제 기간을 1년 → 2년으로 확대



- 청년 중소기업 창업시 5년간 법인세·소득세 감면

(초기 3년 75% + 이후 2년 50%)

## ●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

- 공무원·공공기관 채용확대·선발기간단축·조기발령 추진

- 청년 적합 일자리 사업(글로벌 청년 리더 등 17개, 2.6만명)의 청년우대선발 비율 확대(최소 50% → 70%)

-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사업(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10개, 4.5만명)에서 청년 20% 우대 선발

## ● 청년 해외취업 지원 확대

- 韓商·해외진출 기업 등과 연계한 인턴십 활성화

- 한·일 대학간 3+1 제도(국내대학 3년 + 일본대학 1년 → 일본 취업) 실시,

K-Move 스쿨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일본·아세안 1만명 취업 지원

## 자산형성·주거지원

- 청년내일채움공제·내일채움공제에 일시장려금 추가 지원



- ‘청년우대형 청약저축’ 도입

(연간 600만원 한도, 금리 최고 3.3% 적용,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)

- **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**(공공임대 13만호, 공공지원 12만실)

- 세어하우스(5만실)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공급

- **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,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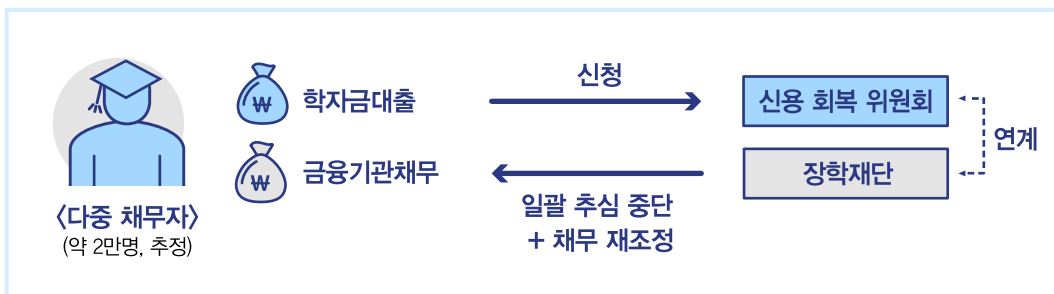
**대학가 주변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**(’18년 시범사업 200실)

민간임대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저리(1.5%) 융자지원하고, 대학이 추천하는 청년 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공급

- **학자금대출 연체자 중 금융기관 채무도 보유한 다중채무자**

(약 2만명, 추정)에 대해 금융채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채무재조정 추진


(현행)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 추심은 중단되나, 장학재단은 예외 → (개선) 신용회복위원회에만 신청하더라도 장학재단도 연계하여 추심 중단 및 채무조정 추진



## 02 여성 |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('22년 55.3%)까지 높이겠습니다

### 육아 부담 경감


-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(첫 3개월 이후) 급여 인상 추진('19년)

 (현행) 통상임금의 40%, 상한 100만원, 하한 50만원 → (개선안) 통상임금의 50%, 상한 120만원, 하한 70만원

-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 어린이집 확대

-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공동 운영 어린이집 신설, 은행·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 모델 전파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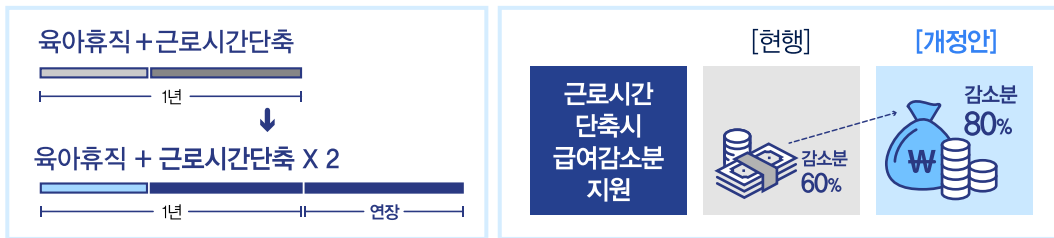
-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'공영형 사립유치원' 도입

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, 저소득층 우선입학, 법인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

- 아동수당(0세~5세, 월 10만원 '18.9월~) 지급

### 경력 단절 방지

- 육아기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,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및 급여감소분 80% 보전



-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세제지원 확대  
<(대상) 중소 → 중소 + 중견, (공제율) 10% → 중소 30% / 중견 15%>

-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
<복직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세액공제>

- 취업성공패키지 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과정 도입

###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

- 임금·승진·퇴직·해고 등에서 성차별적 처우시 처벌 강화  
(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(최대 3배) 도입)

## 03 중장년·어르신 |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

### 재취업 촉진


-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5,000명 확대 ('17년 2만명 → '18년 2.5만명)
- 사회공헌 일자리 약 2,000명 확대 ('17년 4,500명 → '18년 6,470명)
- 60세 이상 고용안정지원금 6만원 인상  
(분기당 18만원, '17년 일몰 → 분기당 24만원, '20년까지)

### 어르신 일자리 재정사업 확대

- 지원대상 7.7만명 확대, 지원단가 5만원 인상  
(지원대상 43.7만명 → 51.4만명, 지원단가 22만원 → 27만원)


###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강화

-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(수혜대상 노인 약 500만명, '18. 9월 시행)
- 국민연금 본인·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금액 확대

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시, 배우자가 본인연금을 받고 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지급비율을 현행 30% → 50%로 상향 검토 (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)

-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(現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가능)
-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
(납부된 적립금은 통합관리하고, 가입사업주 대상 재정지원 병행)

- 연금펀드·신탁 등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손익 비과세

 (현행) 연금펀드·신탁 등에서 발생한 매매손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과세 (3.3% ~ 5.5%) → (개선) 일반형 펀드 등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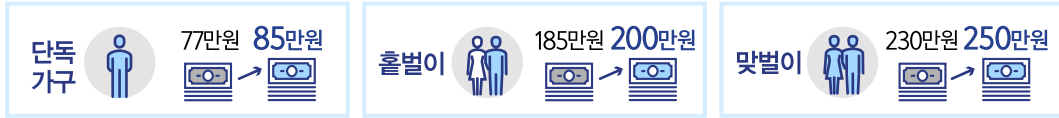
-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

 문턱 제거,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(Barrier-Free) 설계를 적용

# 04 저소득·취약계층 | 생활안정을 적극 돕겠습니다

## 가계소득 증대

- 근로장려금(EITC) 지급액 인상



- 생계급여 확대 (4인 가구 기준, 최대 134만원 → 136만원)

(4인가구 기준)



-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료 지원 ('17년 6,470원 → '18년 7,530원)

##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개선

-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 간소화, 신속지원

소액체당금 지급절차 중 법원 확정 판결 (통상 130일 소요) 요건을 폐지하여,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신속한 체당금 지급 지원 (現 7개월 → 2개월)

-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'비정규직의 정규직화' 확대 추진

-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및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

## 주거취약 계층 지원 확대

- 저소득·취약계층 대상으로 임대주택 41만호(공공임대 27만호, 공공지원 14만호) 공급
- 주거급여 강화(20만원 → 21.3만원, 서울 1인 가구)

## 사회안전망 확충

-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(50% → 60%), 지급기간 연장 (30일 이상)
- 장애인 가구·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 
 <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(월 20.6만원 → 25만원),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(월 12만원 → 13만원)>

## '교육희망사다리' 복원


- 법·의·치·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 
 (법: 정원내 5% → 7%, 의·치·한: 정원 외 5% 신설)
- 교육급여 인상(年, 초등학생 4.1만원 → 11.6만원, 중·고등학생 9.5만원 → 16.2만원)




# 05 생계비(주거·의료·교육·교통·통신) 부담을 낮추겠습니다

## 주거비 경감

### • '18년 공적주택 19만호 공급

 **공적주택** : 공공임대주택 + 공공지원주택 + 공공분양주택  
 (공공지원주택 : 민간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나, 공공지원을 받아 임대료,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)


### •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

 노후공공청사(2만호),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(1만호)을 통해 '22년까지 당초 2만호 → 3만호로 공급 확대

### •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임대·분양주택 공급 확대

- 임대주택 20만호(혼인기간 7년 이내, 예비부부 포함)
- 신혼희망타운 7만호(시세 80%, 수요자 분양·임대 선택)
-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(국민·공공 15% → 30%, 민영 10% → 20%)


### • 디딤돌 대출 확대(7.6조원 → 9.8조원) 및 금리 최대 0.25%p 인하

 **디딤돌 대출** : 시중금리보다 저리(2.25% ~ 3.15%)로 서민(세대주,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)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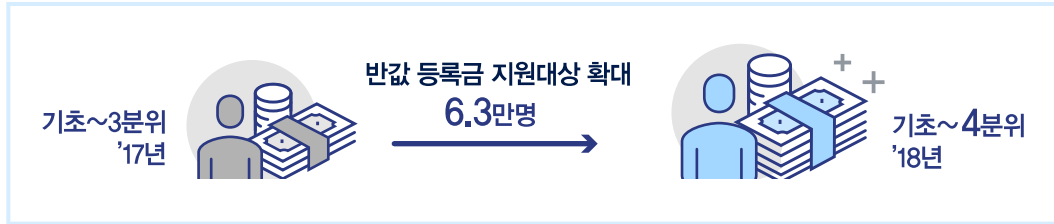
### •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대상

‘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’ 신설(∼’22년, 최대 2만호)

-  **(연체전)** ① 세일앤리스백 리츠(주택기금·NH출자)를 통해 주택 매입·지원  
 \* 리츠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하고, 해당 주택에 5년간 임차하여 거주 후 재매입 가능
- (연체후)** ②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연체자주 채무조정 지원  
 ③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

## 교육·의료비 경감


-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



-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
('17년 8,600억원 → '18년 2조 586억원)
- 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건보 편입, 선택진료 폐지, 2·3인용 병실 건보적용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마련
- 예방치료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, 노인 임플란트 부담률 완화(50% → 30%), 산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추진
- 고혈압·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·관리 서비스 개발·적용  
- 환자교육, 상담 등 관찰관리 서비스에 신설수가 지급,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경감

## 교통·통신비 경감

- 농촌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'100원 택시' 도입 확대

 지자체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, 운영비, 인건비 등 지원  
(('17년) 18개 시군, 9억원 → ('18년) 160개 시군, 80억원)

- 광역급행버스(M-버스) 확충(노선확대 : 32개 → 40여개) 및 광역급행철도 추진  
(양주-수원 노선 예비타당성 완료, 파주-삼성 노선 착공 목표)
- 저소득층 통신비 요금 감면 확대  
\*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月 최대 22,500원 → 33,500원,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月 최대 10,500원 → 21,500원
- 전국 어르신(기초연금수급자) 11,000원 요금감면 시행('18년 상반기)
- 보편요금제 도입('18.상반기, 법안 국회 제출)  
\*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·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 의무화

## 혁신 성장


# 01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

- 혁신성장을 견인·확산할 핵심 선도사업 추진에 정부 정책역량 (R&D, 자금지원 등)을 집중


초연결 지능화	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확립(공공·민간 빅데이터 전문센터 구축 등) 등
스마트공장	업종·규모별 시범공장 구축(~'22년, 50개), 스마트공장 기반기술 R&D 등
스마트팜	준비(스마트팜 보육체계 구축) / 창업(농식품 벤처펀드 등 자금 지원) / 성장(R&D 바우처 등 기술지원)에 이르는 창업생태계 구축
핀테크	규제 샌드박스 확립(금융혁신지원특별법),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
에너지 신산업	공공기관 부지 등 활용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
스마트시티	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(~'22년),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('18년 중 5개 지역),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R&D 강화('18년 77억원)
드론	실증 인프라 구축(비행시험장 확충), 시장창출 지원(드론부대 창설 등)
자율주행차	실증 인프라 확충(테스트베드(화성 K-CITY), 시범주행(판교·평창) 등)

# 02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혁신하겠습니다

- 핵심 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 
- 4대 입법(ICT 특별법, 금융지원법, 산업융합법, 지역특구법) 완료
-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(시행령·규칙) 일괄 정비, 훈령·고시·내규·지침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'그림자 규제' 정비

 **그림자 규제**: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,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 
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훈령·고시·내규·지침·가이드라인 등

- 유권해석제도('非조치의견서', No Action Letter)를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  
(現 금융분야 적용 중)

 **비조치의견서**: 신사업 진출可否 등 사업자 등 청구인의 개별적·구체적  
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

-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구축  
- 비식별자료 활용·결합 등 법적근거 명확화(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)  
-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 강화

# 03 중소·벤처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

## 창업지원 강화

-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

('17.3/4분기 말 116.2조원 → '18년 140조원 수준, 잔액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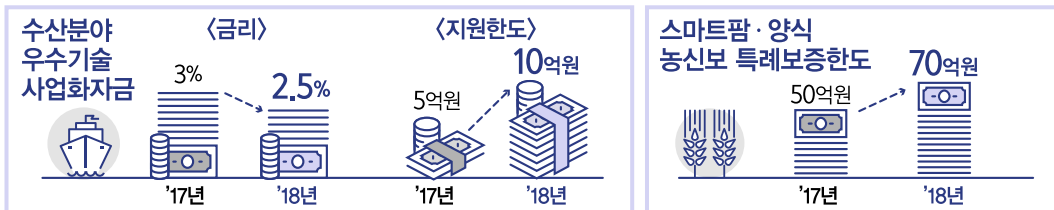
-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미래가치(기술력, 매출·수익전망 등)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금융모델 개발, 신용·기술평가 통합

- 지적재산권(IP) 투자펀드(800억원) 조성 및 IP금융규모 확대('17년 3,500억원 → '18년 4,500억원)

-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

	현행	개선
① 재산세	창업 5년 내, 50% 감면	창업 3년 내, 100% 감면 창업 4~5년, 50% 감면
② 소득세 법인세	창업 5년 내, 50% 감면	고용증가시 추가감면(최대 50%) 신성장서비스업 초기 3년, 75% 감면

- 농수산업 창업자금 지원 확대



- 엔젤투자시 소득공제 확대

현행	개선
~1,500만원 : 100%	~3천만원 : 100%
1,500만원 ~ 5천만원 : 50%	3천만원 ~ 5천만원 : 70%
5천만원 ~ : 30%	5천만원 ~ : 30%

## 투자금 회수 및 재기 지원

- 코스닥 시장 활성화 (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, 코스닥 상장요건 개선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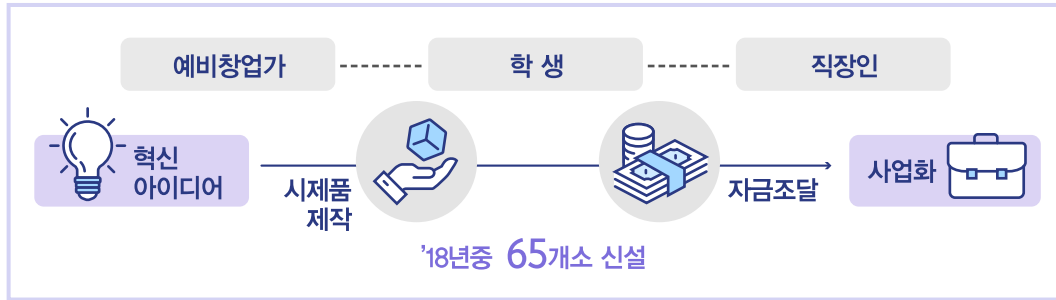
- 창업실패자 연대보증채무 조정 및 재창업 지원

- ① 금융공공기관, 민간 금융기관 보유 부실 연대보증채권 매입,
- ② 매입채권(10억원 이하)은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채무조정,
- ③ 재창업 촉진을 위한 유인장치 마련(예: 원금을 지분형태로 출자전환 방식 검토)

- 벤처 기업출자자의 법인세 체납세금 납부의무 한시적('18~'20년) 면제(최대 2억원)

## 혁신 생태계 조성 가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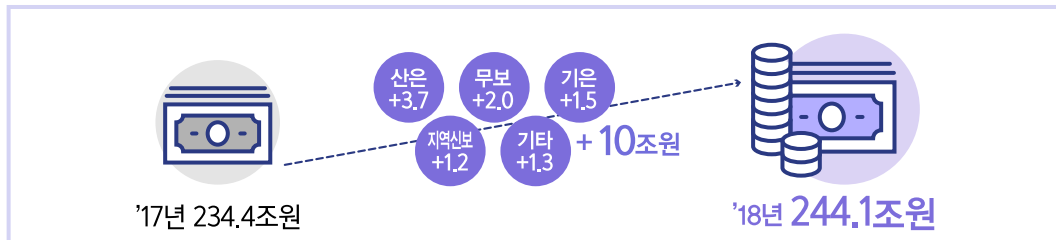
- **메이커 스페이스**(아이디어 발굴·시제품 제작·자금조달 등이 일원화된 사업화 공간) **조성**  
(’18년 중 65개소 신설)




- **’18년 중 약 2.7조원 내외의 혁신모험펀드 조성**  
(’18년 재정 3,000억원(모태펀드 출자 2,000억원, 산은 출자 1,000억원) 투입)
- **벤처기업 지원제도 개편**
  - 혁신성·성장성 높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(‘벤처기업 확인제도’ 개선)
  -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「벤처투자 촉진법」 제정

## 중소·중견기업 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

- **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244.1조원으로 확대**



- **스마트공장 전용 정책자금인 ‘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’**(’18년 3,300억원) **신설**
- **중소기업간 협업 관련 「네트워크법」 제정**  
(협업사업의 등록·관리, 지적재산권·수익분배 등 규정)
- **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창업기업 수준 지원**  
(기업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투자, 경영컨설팅 등 종합 지원)

 **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** : 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협업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

## 혁신 성장


# 04 산업·경제 혁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

### 전방위 금융 혁신

- 핀테크 기업을 '18년 250개, '22년까지 400개 육성

- 새로운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

- 공동 본인인증서비스 확대 도입(금투업권 → 은행·보험권)

 **공동 본인인증서비스** :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본인인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

- 인터넷·모바일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("내계좌 한눈에") 등 금융권으로 확대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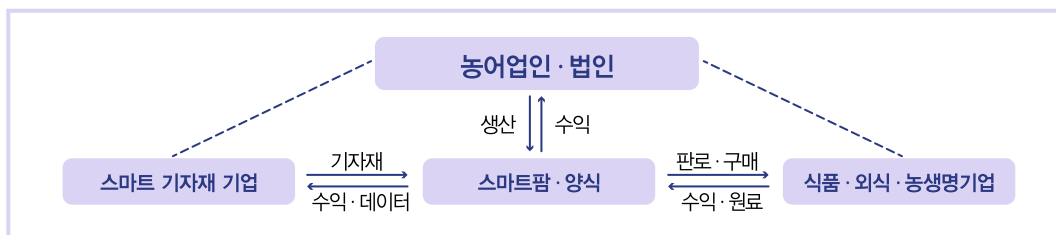
- 금융 진입규제를 개편하여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 유도

(인가업무 단위 개편, 합리적 요건 정비, 인가 절차 투명성 제고 등)

### 농축수산업 혁신

- 스마트팜·양식과 연관산업간 동반성장형 영농모델 구축

- 혁신거점인 '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'(5년간 4개소) 마련, 첨단 양식기술 확산을 위한 스마트 육상 양식 단지 조성



- 농수산 분야 기술금융 체계 전면 적용 ('20년 10조원 공급 목표)

 농수산업 전문기관 기술평가가 은행 기술신용대출에 활용되는 체계 구축

-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촘촘한 창업지원체계 구축

- 초창기 기업·혁신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농식품벤처펀드·수산펀드, 혁신모험펀드 공동투자('18년 400억원, 3년간 1,200억원)

-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해 농신보 보증비율 상향(80% → 90%)

## 사회·문화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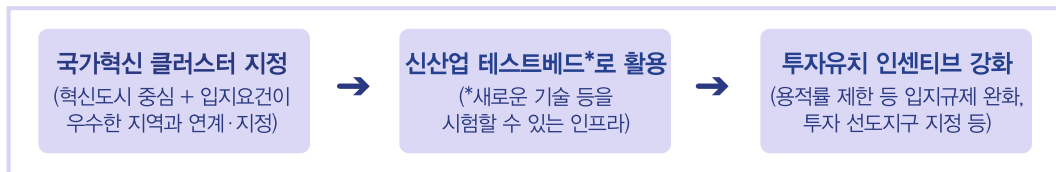
(문화)	게임·출판 등 부문별 펀드 조성(총 1천억원 이상), VR종합지원센터 조성,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
(관광)	관광산업 육성펀드 확대('17년 270억원 → '22년까지 1,500억원), 新관광서비스 기업 지원('18년 80개) 등
(교육)	실감형 디지털교과서 개발·적용(50종), 대학창업펀드(150억원) 확대 등
(환경)	환경산업전문펀드 조성('17년~'18년, 750억원), 환경산업육성 융자지원('18년, 455억원) 등
(보건)	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신설,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 등

## ICT 등 新기술 기반의 서비스업 혁신

- (스마트홈) 스마트 가전기기 개발('18년 IoT 가전 R&D 20억원) 등
- (헬스케어) 개인별 암 최적 진단·치료법 개발
- (공유경제)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및 택시·카풀업계간 공존방안 마련(3월)

## 국가혁신·산업거점 클러스터 육성

-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·육성
- 산업 단지를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육성  
(산학연 R&D 협의체('17년 92개 → '18년 100개), 산학융합지구 확대 등)



## 주력업종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


- 조선·해운·자동차 등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(1/4분기)
  - (조선) 국내화주·선사의 고부가 선박(LNG 추진선 등) 발주 지원 등
  - (해운)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 시행 등
  - (자동차) 전기차 구매지원(개소세 감면 확대, 200만원 → 300만원)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
- 신 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신속히 추진
  - '사전부실예방·경쟁력 제고, 시장중심, 산업·금융측면 균형있게 고려'라는 3대원칙 유지

## 01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

###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리·피해구제 강화

- 소비자 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집행체계 개편

-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 2배 상향,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,  
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, 가맹법·대규모유통업법·대리점법 상의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


 **사인 금지청구제** :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,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

- 4대 분야(가맹·유통·하도급·대리점) 갑을관계 개혁
- 소액·다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 도입,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징벌배상제 시행(4월)

###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확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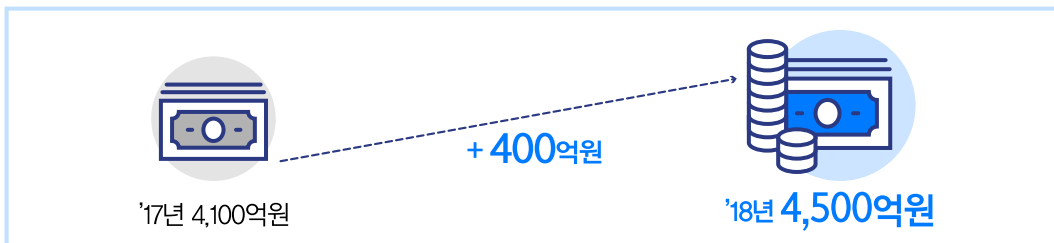
- 일감몰아주기 근절 (신고포상금제,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)
-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 및 이사·감사의 책임성 강화
- 스투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·확산

(국민연금('18년 하반기)에 우선 도입하고 주요 연기금 도입 추진('19년~))

 **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** → 적극적 주주권 행사 부담 완화, 일정요건 충족시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검토


### 소상공인 경영 비용 부담 완화 등 골목상권 보호

-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마련 및 소공인 특화자금 확대



- 상권내몰림 (젠트리피케이션)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- 상권주체간 상생협약(임대료 인상 자제, 장기임대 보장 등)을 체결한 상권구역을 지정·지원하기 위한 「지역상권법」 제정

 **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(現 5년) 및 임대료 인상을 상한(現 90%)에 관한 특례 적용, 상권구역 상생발전을 위한 보조·융자 지원 등 규정**



## 사회적경제 활성화


- 「사회적경제기본법」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(\*18. 상반기)
- 사회적경제 관련 금융 등 핵심 인프라 지속 확충



## 02 공공부문에서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

### 국가균형발전·재정분권

- 지역별 특화 사업 중점 지원, 계획계약 제도 도입 검토

 **계획계약 제도** : 시·도가 균형발전 사업의 내용·재원배분 등에 대해 중앙부처와 계약을 체결하면, 중앙부처는 필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

- 국세·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, 중앙-지방간 기능조정 등을 포함한 「재정분권 종합대책」 마련 (~2월)




### 공평 과세 실현

- 공평과세·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,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

###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구현

-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
  - 채용비리 혐의자 수사·감사 의뢰, 성과급 지급률 하향조정,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 제도개선 (「공공기관 운영법」 개정)
-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

 (1단계) 사회적 가치 중시 등 평가체계 개편 (\*17년 말)  
(2단계) 규제최소화 및 직무중심 보수체계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 (\*18년 말)